

|       |               |
|-------|---------------|
| 의안번호  |               |
| 의 퇴 인 | 안상훈 의원        |
| 회 답 일 | 2025. 10. 30. |
| 추계번호  | 25F5385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하부규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1인당 공제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697.1억 원, 2028년 860.7억 원 등 5년간 총 5,059.0억 원 (연평균 1,011.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은 5년간 적용되므로 2027~2031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누적      | 연평균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 제29조의8제6항) | 697.1 | 860.7 | 998.6 | 1,158.5 | 1,344.1 | 5,059.0 | 1,011.8 |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9조의8제6항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이 직전년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요건의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인당 공제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액: 중소기업 700만 원, 중견기업 500만 원</li> <li>- 적용기한: 2030.12.31.</li> </ul> </li> </ul> |    |

##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 |
|----|----------------------------|------|----|
| 1  | 안 제29조의8 제6항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중소·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인원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
  - 해당 과세연도의 중소·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는다고 가정
  - 해당 기업의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여 신설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
  -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수 토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을 반영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수에서 신설안 적용대상의 평균 비중과 신설안 적용대상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규모별 평균 비중을 산출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최근 5년('20~'24)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의 연평균 증감율(16.02%)에 따라 향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수가 변동한다고 가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에서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신설안 적용대상)이 차지하는 최근 5년('20~'24)간 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신설안 적용대상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규모별 비중이 향후에도 일정하다고 가정

## 3. 상세 추계내역

### 1) 관련 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sup>1)</sup>된 이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이 향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1) 「고용보험법」 [시행 2020.8.28.] [법률 제16557호, 2019.8.27., 일부개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삭제
  -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 제2호 삭제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시행 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 이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

-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sup>2)</sup>의 사업주
- (지급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 지급액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 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추가 지급

[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단위: 만 원)

|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 기본 지급액              | 360  | 30      |
| 추가 지원 <sup>1)</sup> | 120  | 10      |

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

자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7호 (2025.5.21. 시행)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 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되어 시행 중

- (현행규정)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2025.12.31.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감면실적)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감면실적은 130.8억 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22.12.31.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제

[표 3]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3~2024년

(단위: 억 원)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      | 통합고용세액공제 |
|-----|------|--------------|------|----------|
|     |      | 2023         | 2024 | 2024     |
| 소득세 |      | 25.0         | 8.5  | 46.8     |
| 법인세 | 중소기업 | 27.1         | 12.9 | 45.0     |
|     | 중견기업 | 24.4         | 0.4  | 39.0     |
|     | 소계   | 51.5         | 13.3 | 84.0     |
| 합계  |      | 76.5         | 21.8 | 130.8    |

자료: 국세통계포털 및 국세청 제출자료

□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의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추가 신설

- (공제대상)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② 「남녀고용평등법」 상 6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로서, ④ 해당 근로자의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공제 적용
- (공제제외) ①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수근로자 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자
- (공제금액) 중소기업 700만 원, 중견기업 500만 원
- (적용기한) 2030.12.31.까지

## 2) 추계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현황) 20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수급자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14.8%) 증가하였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 이용의 확산 속도가 빠름

[표 4] 기업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 대규모 기업             | 5,282  | 35.9 | 5,600  | 33.6 | 6,768  | 34.8 | 8,249  | 35.6 | 9,908  | 37.2 |
| 중소기업 <sup>1)</sup> | 9,416  | 64.1 | 11,089 | 66.4 | 12,698 | 65.2 | 14,939 | 64.4 | 16,719 | 62.8 |
| 합계                 | 14,698 |      | 16,689 |      | 19,466 |      | 23,188 |      | 26,627 |      |

주: 1)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025.2.23. 보도자료 참고

- (신설안 적용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상 6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2021년 전년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인원 중 6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인당 지급액(30만 원×6개월=180만 원)을 초과한 자에 대한 수급자 현황 자료임
  - － 2020년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 개편과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sup>3)</sup>’ 시행됨에 따라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육아지원 3법 개정을 말한다.

[표 5]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백만 원)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인원 <sup>1)</sup> | 1,587 | 4,744 | 8,325  | 9,570  | 13,974 |
| 지급액              | 2,938 | 9,077 | 19,645 | 24,591 | 38,906 |

주: 1) 6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추정)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5년('20~'24)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신설안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로 신설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최근 5년('20~'24)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의 연평균 증감율(16.02%)에 따라 향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수가 변동한다고 가정
    -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에서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신설안 적용대상)이 차지하는 최근 5년('20~'24)간 평균 비중(37.95%)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인원 중 신설안 적용대상 비중: 2020~2024년

(단위: 명, %)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평균 비중 |
|--------------|--------|--------|--------|--------|--------|-------|
| 전체 수급자 인원(A) | 14,698 | 16,689 | 19,466 | 23,188 | 26,627 | 37.95 |
| 신설안 적용대상(B)  | 1,587  | 4,744  | 8,325  | 9,570  | 13,974 |       |
| 비중(C=B/A)    | 12.15  | 31.51  | 47.67  | 46.07  | 59.83  |       |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신설안 적용대상 인원수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명)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신설안 적용대상 추정치 | 13,601 | 15,780 | 18,307 | 21,240 | 24,643 |

- (수급자가 소속된 기업규모)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규모별 비중을 추정하여 산출
  -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3개사의 기업규모별 비중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8]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결과: 2024년

(단위: 개사,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합계  |
|------|------|------|------|-----|
| 선정결과 | 137  | 25   | 41   | 203 |
| 선정비중 | 67.5 | 12.3 | 20.2 | 100 |

자료: 노사발전재단 제출자료

- 신설안 적용대상인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의 연도별 추정치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규모별 평균 비중을 반영하여 신고연도 기준 감면실적을 추계

[표 9] 신고연도 기준 감면실적 추계: 2027~2031년

(단위: 억 원)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 중소기업 | 642.5 | 755.4 | 876.4 | 1,016.8 | 1,179.7 |
| 중견기업 | 54.6  | 105.3 | 122.2 | 141.7   | 164.4   |
| 합계   | 697.1 | 860.7 | 998.6 | 1,158.5 | 1,344.1 |

###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하부규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1인당 공제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697.1억 원, 2028년 860.7억 원 등 5년간 총 5,059.0억 원 (연평균 1,011.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은 5년간 적용되므로 2027~2031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누적      | 연평균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 제29조의8제6항) | 697.1 | 860.7 | 998.6 | 1,158.5 | 1,344.1 | 5,059.0 | 1,011.8 |

## IV. 부대의견

□ 없음

## V.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세제분석2과  | 이수인 | 백경엽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이수인 | 02-6788-4839 | suin2025@assembly.go.kr |